

LSNJ

Just Justice

데이트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을 위한

귀화의 법적 권리

데이트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귀하의 법적 권리

뉴저지 법률지원국

뉴저지 법률지원국은 법적인 조언을 받거나 법률대리인을 내세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출판물을 제작했다. 이 출판물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 사용, 교육적 목적을 위한 복사만 허용된다. 복사물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이 출판물이 제작된 날짜 및 제작한 곳 (뉴저지 법률지원국)을 명시해야 한다.

이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2020년 3월 10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이다. 이 책자는 각자가 겪고 있는 특정한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조언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뉴저지 법률 지원국의 홈페이지(www.lsnjlaw.org)에서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최신의 법적 조언을 얻기 바란다.

데이트 폭력과 괴롭힘

귀하의 법적 권리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데이트 폭력과 괴롭힘”이라 한다. “배우자 학대”, “가정폭력”, 혹은 “성적관계 대상 폭력”이라 불리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 혹은 괴롭힘이 반드시 혼인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의 폭력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것은 16-24세의 여성들이다. 이 지침서는 귀하의 연인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정도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넘어갈 때,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도움을 주기위해 제작되었다.

데이트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사실 제² 편

- ✕ 백오십만명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이 매년 사귀는 남자/여자 친구 혹은 데이트 중인 이들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다.
- ✕ 미국의 젊은층 3명 중 한명이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다.
- ✕ 상대를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12살에서 18살 사이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 ✕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더 일찍 나타날 수록 학대는 더욱더 공격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 ✕ 여대생의 반(43%) 정도가 파트너로부터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지만 많은 여학생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
- ✕ 학대당하는 관계에 있던 젊은이들 중 33%만이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상의했다.

¹ 데이트 폭력에 관한 통계 (2013).

² 데이트 폭력에 관한 통계 (2013).

학대를 받는 관계임을 경고해주는 증상 인식하기

LoveIsRespect.org 건강한 관계와 학대받는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loveisrespect.org/dating-basics/relationship-spectrum) 에서 인간관계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이해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다음에 대한 정보와 힌트를 담고 있다.

- ⌘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학대의 여러 유형
- ⌘ 완력과 조종의 수레바퀴-학대하는 상대방이 귀하를 손아귀에 넣기위해 사용하는 방법
- ⌘ 괴롭히겠다는 결심
- ⌘ 건전한 관계의 범위 설정하기 등.

뉴저지에서는 인간관계의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가정폭력인가?

신체적인 학대

- ※ 침뱉기
- ※ 사람을 향해 물건 던지기
- ※ 머리채 잡아 당기기
- ※ 물거나 할퀴기
- ※ 화상입히기
- ※ 몸을 बे기
- ※ 밀기, 떠밀기, 붙잡기
- ※ 차거나 넘어 뜨리기
- ※ 맨손으로 뺨을 때리기
- ※ 주먹으로 펀치 날리기
- ※ 목조르려 시도하기
- ※ 무기로 공격하기

성적인 학대

- ※ 귀하가 원치않는 방식임을 알고 있음에도 귀하에게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
- ※ 귀하가 원치않는 방식임을 알고 있음에도 귀하로 하여금 성적으로 학대자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것
- ※ 귀하가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 ※ 귀하가 타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귀하가 원치않는 기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 귀하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만나서 직접,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혹은 다른 사회소통망으로)협박

- ※ 귀하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것
- ※ 귀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
- ※ 귀하의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
- ※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
- ※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겠다고 협박하는 것
- ※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귀하의 어떤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

뉴저지에서는 인간관계의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가정폭력인가?

그 외 다른 학대행위들

- ⌘ 사회통신망(sns)을 이용하여 귀하를 조종하고,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겁주는 것
-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에도 수백번씩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
- ⌘ 떠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
- ⌘ 문을 막거나, 차열쇠를 빼앗거나, 귀하의 자동차를 망가뜨려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 ⌘ 감금
- ⌘ 귀하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귀하를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
- ⌘ 전화를 빼앗거나 망가뜨려서 전화로 도움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 ⌘ 전화를 걸어 말없이 끊거나, 집이나 직장에 전화를 걸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귀하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귀하를 괴롭히거나 놀라게 하는 것
- ⌘ 주먹으로 쳐서 벽에 구멍을 내거나, 귀하 소유의 책자들이나 옷을 찢어버리거나, 전화기를 부수는 등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귀하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손상을 입히는 것
- ⌘ 집을 따라다니며 의도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것
-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것
- ⌘ 귀하를 공격하거나 절도를 목적으로 귀하의 집에 침입하는 것

안전계획 세우기

학대를 당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웹사이트 (womenslaw.org/about-abuse/safety-tips) 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안전계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법적 보호

가정폭력금지 법령

판사는 다음의 경우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1) 학대자가 최소 18세 이상이고 귀하가 그 가해자와 결혼을 했거나 가해자의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2) 귀하가 학대자와(연인 관계를 포함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3) 귀하가 뉴저지주 가정폭력금지법 (N.J.S.A 2C:33 et al.) 에 명시되어 있는 19개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4) 앞으로도 지속해서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가정폭력금지법의 보호를 받는 19가지 범죄행위

- ⌘ (N.J.S.A. 2C:33-4) 괴롭힘
- ⌘ (N.J.S.A. 2C:12-1) 공격
- ⌘ (N.J.S.A. 2C:12-3) 폭력적 위협
- ⌘ (N.J.S.A. 2C:17-3) 범죄행위
- ⌘ (N.J.S.A. 2C:13-2) 불법적인 제재행위
- ⌘ (N.J.S.A. 2C:13-3) 불법감금
- ⌘ (N.J.S.A. 2C:18-2) 절도
- ⌘ (N.J.S.A. 2C:14-1, 2C:14-3) 불법적인 성적접촉
- ⌘ (N.J.S.A. 2C:14-1, 2C:14-2) 성폭력
- ⌘ (N.J.S.A. 2C:13-1) 납치
- ⌘ (N.J.S.A. 2C:12-10, 2C:12-10.1) 스토킹
- ⌘ (N.J.S.A. 2C:14-4) 음란행위
- ⌘ (N.J.S.A. 2C:18-3) 불법적인 가택 침입
- ⌘ (N.J.S.A. 2C:11-1 to 2C:11-4) 살인
- ⌘ (N.J.S.A. 2C:13-5) 불법적인 강요
- ⌘ (N.J.S.A. 2C:15-1) 강도 행위
- ⌘ (N.J.S.A. 2C:29-9)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의 무시
- ⌘ (N.J.S.A. 2C:15-1) 사이버 괴롭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 힐 위험이 있는 기타 범죄행위

위 각 범죄에 대한 세부사항은 뉴저지 가정폭력에 관한 19가지 범죄 (<http://bit.ly/2QIJw6g>) 를 참조할 것

접근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시 접근금지명령이란 피해자(원고) 한쪽이 시법원 판사 혹은 상급법원 판사에게 증언하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학대혐의가 있는 자(피고)에게 내려지는 법원명령이다. 이 명령은 피고가 원고에게 접근하는 것과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불허한다. 이 임시명령은 그 후 10일 이내에 쌍방 모두에게 최종접근금지 명령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를 위한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한다. 이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원고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 측 증언에 근거하여 정식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최종접근금지명령(FRO)은 가정폭력건이 법원에 제출된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앞에서 증언하고 관련 증거물을 제출하거나, 피고가 공청회 참석을 포기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를 한 것을 시인할 경우 내려지는 법원명령이다. 이 법원명령은 보통 피고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와의 접촉을 금하게 한다. 뉴저지법에 따르면 이 최종 접근금지명령은 영구적으로 유효하거나 쌍방중 한쪽이 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을 납득시켜 법원이 이 명령을 무효화할때까지 유효하다.

접근금지명령은 어떻게 얻어내는가?

임시접근금지명령 및 최종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과정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일련의 짧은 비디오와 글로 상세하게 설명 되어있다.

- ⌘ 뉴저지 법률지원국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비디오 (<http://bit.ly/2cOSDbS>)
- ⌘ 접근금지명령을 얻어내는 방법(글) (<http://bit.ly/38DQdHd>)
- ⌘ 가정폭력: 뉴저지 가정폭력 희생자의 법적권리에 관한 지침(소책자) (<http://bit.ly/2TRJfZO>).

학대하는자(피고)가 18세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일반적으로 학대하는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얻어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 피고가 피해자와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하게 했거나 피해자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귀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 예외조항을 경찰이나 법원에 상기시켜 줘야할 수도 있다.

소년비행법

유소년 비행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위에 언급한 19가지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법적인 행위에 적용된다. 미성년자들이 이 행위들을 저질렀을 경우 범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동일한 법규와 법정의가 적용된다.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비행”이라 한다.

소년 비행과 접근금지명령

뉴저지 법률국(LSNJ)은 보통의 경우 미성년자 비행과 관련하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관한 통보를 받지 않는다. 귀하가 미성년일 경우 접근금지명령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이나 법원에 문의해볼 가치가 있다. 법원이 발행한 가정폭력 절차에 관한 소책자에 따르면, 미성년 가해자가 만약 성인이었다면 가정폭력이라 정의할 수 있는 비행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사전 혹은 사후 기본적인 접근금지명령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을 관계기관과 소통 시에 상기시켜 줄 것을 추천한다. www.njcourts.gov/courts/assets/family/dvprcman.pdf, 뉴저지 법원의 가정폭력에 관한 소책자 (New Jersey Court’s Domestic Violence Procedures Manual) 의 §2.1.3C,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별조항을 읽어 보기 바란다.

소년비행-접촉금지 명령

성인이나 미성년자가 범죄나 비행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은 “접촉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공청회가 열리기 전 내려지는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얻어낼 수가 없다면, 귀하는 청소년 비행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때 경찰이나 법원에 “접촉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접촉금지” 명령은 귀하를 학대하는 피고가 피해자인 귀하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보호받기

연방법: 타이틀 IX

대학교

타이틀 IX법은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대학당국에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별에 근거를 둔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대학 측이 이를 감지하고 통제할 책임을 지게하는 법이다. 대학측은 타이틀 IX법이나 자체 학칙에 의거하여,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이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될 경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의한 폭력이나 괴롭힘에 관한 자체규정을 둘 수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타이틀 IX” 혹은 “가정폭력”을 검색하면 이에 관한 대학당국의 정책을 찾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각 대학은 타이틀 IX법 담당행정관을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해 알고자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이 담당관을 찾으면 된다. 타이틀 IX법의 규정을 더 알고자 하거나 제보를 하려 하는 경우 이 법을 관할하는 미교육성 시민법 사무국사이트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를 찾아가면 된다.

고등학교(실제 K-12학교)

앞서 언급한 대학에 적용되는 타이틀 IX법은 실제로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립학교와 많은 K-12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은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별에 근거를 둔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학교 측이 이를 감지하고 통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학교당국은 타이틀 IX법이나 자체 학칙에 의거하여, 특히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으로 간주될 경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의한 폭력이나 괴롭힘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둘 수있다. 각 학군은 타이틀 IX법 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한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담당관을 찾으면 된다. 타이틀 IX법의 요구사항을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미 교육성 시민법 사무국사이트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를 찾아가면 된다.

뉴저지법: 괴롭힘, 겁주기, 왕따시키기

고등학교 (K-12)

뉴저지의 괴롭힘, 겁주기 및 왕따 관련법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교로 하여금 “교내에서나 학교가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성별 관련 학생간 혹은 교직원에게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사전계획된” 모든 형태의 괴롭힘, 겁주기 혹은 왕따시키기(소위 “HIB”)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괴롭힘 등 성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교내, 학교 버스 안, 또는 학교 법규나 정책의 지원을 받는 장소일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각 교육구는 괴롭힘, 겁주기 및 왕따(HIB)의혹을 조사하는 책임을 지는 반왕따 조정관과 반왕따 전문가를 임명해야한다. HIB 관련법과 HIB에 관한 교육구의 정책에 관해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학교행정담당자에게 반왕따 조정관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HIB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학교 교장, 행정관, 또는 교육구의 반왕따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그리고 또 뉴저지 HIB법 문제를 총괄하는 뉴저지 교육부 웹사이트를 참조 할 수도 있다.

그외 법적 보호조치

웹사이트 www.lsnjlaw.org/Family-Relationships/Domestic-Violence/Pages/default.aspx. 에서 뉴저지주에서의 가정폭력 희생자의 법적 권리 (주거, 직장, 및 온라인 등 포함)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할 경우, 아래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접해볼 수 있다.

- ⌘ 리벤지 포르노의 정의와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http://bit.ly/38I9nf0> 에서 알아볼 수 있다.
- ⌘ 온라인상의 안전문제는 <http://bit.ly/39HHCEC> 에서 알아볼 수 있다.
- ⌘ 온라인상 괴롭힘을 막는 법에 관해서는 <http://bit.ly/2Q3Asmw> 에서 알아 볼 수 있다.